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3. 31 선고 2021가합51378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 고 1. A 주식회사

2. B

변 론 종 결 2022. 3. 10.

판 결 선 고 2022. 3. 3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,071,980원 및 그 중 822,098,780원에 대하여 2021. 1. 13.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21. 3. 8.까지, 피고 B은 2021. 3. 10.까지는 각 연 10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,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다)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재판장 판사 한정석, 판사 강석규, 판사 김소연

별지